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5,571,455	12,167,144
일반회계	298,399,783	8,951,993
특별회계	107,171,672	3,215,150
공기업특별회계	3,629,179	108,875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3,629,179	108,875
기타특별회계	103,542,493	3,106,27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605,519	408,1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7,602	17,028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1,495,355	1,244,86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773,433	233,20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423,000	492,690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675,000	50,25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618,811	258,564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900,651	27,020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2,455,022	373,651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100	84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88,00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